-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-

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2020. 4.

행정건설위원회

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제안일자 : 2020. 4.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, 제52조 규정과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·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,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감사기간은 8일간으로 한다. (2020. 6. 2. ~ 6. 9.)
○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, 마포1번가연구단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관광일자리국, 교통건설국 및 동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으로 한다.
○ 감사반 편성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(8명)으로 한다.
○ 감사장소는 행정건설위원회실, 동주민센터 등으로 한다

3. 관계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~제50조, 제52조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제2조, 제5조 등

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, 제52조 규정과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,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2020. 6. 2.(화) ~ 6. 9.(화) [8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○ 구본청(감사담당관, 마포1번가연구단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관광일자리국, 교통건설국)
○ 동주민센터
○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사위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행정건설위원회	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(8명)	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교통건설국	행정건설위원회실	유준상	박명제
		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		최국모	이상은
		동주민센터	해당 동주민센터	유준상	박명제

5. 감사일정

일 정	내 용	비 고
2020.6.2.(화)	o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	
2020.6.3.(수)	o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- 총 무 과 - 자치행정과 - 홍 보 과 - 청소행정과 - 민원여권과 - 전산정보과	
2020.6.4.(목)	o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- 기획예산과 - 재 무 과 - 징 수 과 - 세 무 1 과 - 세 무 2 과 - 부동산정보과 o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	
2020.6.5.(금)	o 관광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- 관 광 과 - 일자리지원과 - 문화예술과 - 지역경제과 - 생활체육과	
2020.6.8.(월)	o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- 교통행정과 - 교통지도과 - 건설관리과 - 도 로 과 - 치 수 과	
2020.6.9.(화)	o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o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사무감사 o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o 감사종료 선언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감사담당관, 마포1번가연구단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관광일자리국, 교통건설국의 각 과 및 동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감사 진행순서

가. 감사실시 선언

나. 위원장 인사

다. 증인선서

라. 피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
마. 업무보고 청취

바. 질의 · 답변

사. 감사종료 선언

8. 행정사항

가.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
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다.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, 감사반 변경,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은 감사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.